

별첨

산업통상부 방첩업무 시행지침 개정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사유
산업통상 ~~자원~~ 부 방첩업무 시행지침	<u>산업통상부</u> 방첩업무 시행지침	·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 변경
제1조(목적)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(대통령령 제23780호)의 적절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(대통령령 제35947호)의 적절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	· 상위법령의 개정
제2조(정의) 생략 1. "규정" <u>이라 함은</u> 방첩업무규정(대통령령 제23780호)을 말한다. 2. "소속기관" <u>이라 함은</u> 산업통상 ~~자원~~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. 3. " <u>산하기관</u> " <u>이라 함은</u>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업무상 산업통상 ~~자원~~ 부장관의 지도·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생략 1. "규정" <u>이란</u> 방첩업무규정(대통령령 제35947호)을 말한다 2. "소속기관" <u>이란</u> 은 산업 ~~통상부~~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. 3. " <u>산하 공공기관</u> " <u>이란</u>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업무상 산업 ~~통상부~~ 장관의 지도·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.	·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 준용 * 정의 규정에서 쓰는 ‘~(이)라 함은 ~을/를 말한다’에서 ‘~(이)라 함’의 ‘함’은 ‘말함’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서술어 중복, ‘~란 ~을/를 말한다’로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 · 상위법령의 개정 · 문구 수정 ·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 변경
제3조(적용) ① 이 지침은 산업통상 ~~자원~~ 부(이하 "본부"라 한다)와 그 소속기관 및 <u>산하 공기업, 준정부기관, 기타 공공기관</u> (이하 " <u>산하 기관</u> " <u>이라 한다</u>)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관계조항은 산하의 유관 주요기업체 및 단체에도 적용된다.	제3조(적용) ① 이 지침은 산업 ~~통상부~~ (이하 "본부"라 한다)와 그 소속기관 및 <u>산하 공공기관</u> 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관계조항은 산하의 유관 주요기업체 및 단체에도 적용된다.	·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 변경 · 문구 수정

② 소속기관, <u>산하 기관</u>, 유관주요기업체 및 단체의 장은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규정과 본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.	② 소속기관, <u>산하 공공기관</u>, 유관주요기업체 및 단체의 장은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규정과 본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.	
제4조(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) 생략 1. 생략 2. 생략 3. <u>산하기관</u> : 보안업무를 총괄수행하고 기록물을 담당하는 부서장	제4조(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) 생략 1. 생략 2. 생략 3. <u>산하 공공기관</u> : 보안업무를 총괄수행하고 기록물을 담당하는 부서장	· 문구 수정
제47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<u>248</u>호)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<u>2016년 6월 30일까지</u>로 한다.	제47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<u>431</u>호)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<u>2028년 12월 31일까지</u>로 한다.	· 상위법령의 개정 · 문구 수정